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516,463,159	15,493,895
일반회계		508,271,341	15,248,140
특별회계		8,191,818	245,755
	기타특별회계	8,191,818	245,755
	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593,560	17,807
	주차장사업특별회계	7,551,498	226,545
	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	46,760	1,40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,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"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76,89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